동탄2 테크노밸리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 업종[도시첨단산업단지 제외]

[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(5자리) 코드 기준]

【 동탄2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】

○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됨.

- 「대기환경보전법」제2조 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.
- 「대기환경보전법」제2조 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써 동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.
-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것. 다만,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.
-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써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.
- 「폐기물관리법」제2조 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.
- 「소음.진동관리법」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.

※ 관련법 :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8조의5(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)

○ 제조업

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제조업 [10*** ~ 34***]

단,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34조(도시형공장의 구분 및 범위)에 따른 도시형공장에 한하여 허용됨.

○ 벤처기업[산업집적법 제28조의5(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)제1항제2호]

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

○ 정보통신산업[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3항]

1. 컴퓨터 프로그래밍,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[62***]
2.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[582**]
3. 자료처리, 호스팅,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[6311*]
4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 정보 서비스업 [63991]
5. 전기 통신업 [612**]
6. 영상·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[603**]

○ 첨단기술

「산업발전법」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

○ 지식산업[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]

1. 「통계법」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구개발업 [70***]
2. 「고등교육법」제25조에 따른 연구소의 연구개발업
3.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(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학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이나「대학설립·운영 규정」제2조의7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대학만 해당한다)의 연구개발업

   가. 법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산학융합지구에 입주할 것

   나. 건축연면적 2만제곱미터 이하일 것

   다. 기업과의 공동연구를 위한 연구실, 연구개발을 위한 장비 지원시설 및 기업부설연구소를 위한 시설의 면적이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

4. 건축기술, 엔지니어링 및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[72***]
5. 광고물 작성업 [71393]
6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산업
가. 영화,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[5911*]
나. 영화,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[5911*]
다. 영화,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[5911*]
라. 녹음시설 운영업 [59202]
마. 프로그램 공급업 [60221]
바. 공연시설 운영업 [90110]
사. 공연 기획업 [90191]
아.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[90199]
7. 출판업 [58***]
8. 전문 디자인업 [7320*]
9. 포장 및 충전업 [75994]
10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서비스업
가.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운영하는 경우
나. 제3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의 경우
다.「대학설립·운영 규정」제2조의7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
라. 온라인 교육 학원(기술 및 직업훈련 관련 교과과정을 교육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11. 경영컨설팅업(재정·인력·생산·시장 관리나 전략기획에 관한 자문업무 및 지원을 하는 기업체만 해당한다) [71531]
12. 번역 및 통역 비스업 [73902]
13. 전시 및 행사 대행업 [75992]
14. 환경 정화 및 복원업 [39001, 39009]
15. 삭제
16.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[59201]
17.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[71400]
18.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[73903]
19. 물품감정, 계량 및 견본 추출업 [73904]
20. 무형재산권 임대업 [76400]
21. 광고 대행업 [71310]
22. 옥외 및 전시 광고업 [71391]
23.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[74100]
24.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[75320]
25.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[75991]
26.「이러닝(전자학습)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업(이 항 제7호, 제10호 또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산업을 경영하는 입주기업체가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
27. 법무관련 서비스업 [71101~71103,71109]
28.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[71201, 71202]
29.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그 외 기타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으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산업.
이 경우 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산업을 게시해야 한다.

○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(2025. 3. 18. 고시)

1. OEM제조업- 공장등록은 불가 [10***~34***]
2. 종합·전문건설업 **[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[별표1]에 해당하는 건설업]**
3. 스마트팜**[인공구조물 내 생육환경을 인공적으로 제어하여 생산하는 시스템]**